

사전 예방적 법률서비스

‘제조물 책임법’

글 | 김 현 _ 법무법인 세창 대표/대한변협 사무총장 hyunkim@sechanglaw.com

누구나 한번쯤 물건을 사용하다가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어 추가로 피해를 보는 등의 경험을 해 본 일이 있을 것이다. 통상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 “물건을 왜 이 따위로 만들었어?” 또는 “경고문도 제대로 안 붙여 놓고, 설명도 없네” 하는 푸념을 하곤 하는데, 이러한 우리의 푸념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공산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TV나 라디오에서부터 자동차나 첨단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현대 과학 기술의 산물들 속에 묻혀 살고 있다. 이렇게 공산품 속에 묻혀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사용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도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제품의 다양화와 더불어 피해 또한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물적 피해에서부터 인명 피해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조물을 둘러싼 손해배상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어떤 입증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을까.

제조물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법률로 규정

공산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구제받기 위한 법률상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산품을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손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알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어떤 손해냐에 따라 근거법률이 달라지지 때문이다. 가령 컬러 TV를 한 대 샀는데, TV를 시청하는 중에 갑자기 TV가 폭발하여 집에 화재가 발생하고 구매자가 화상을 입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폭발사고에서 구매자가 입은 손해는 ①TV자체를 잃게 된 손해 ②화재로 인한 물적, 인적 손해(확대된 손해)로 대

별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예에서 ①번 TV 자체를 잃게 된 손해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 581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②번 화재로 인한 물적, 인적 손해(확대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2년 7월 1일부터는 일단 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고 보면 맞다. 한편, 이 제조물책임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책임에는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하고 있어 위에서 본 것처럼, 확대 손해에 관해서만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 제조물책임법이 소송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사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우리 판례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 완화하는 법리를 전개하여 소비자측에서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제조업자의 제조상의 과실을 추정하고, 인과관계도 함께 추정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법원의 이러한 태도가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제조물책임법으로 명문화되었다고 이해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을 묻는 경우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해서도, 우리 판례는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



이 아닌 다
 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
 생한 것임을 입
 증하지 못하는 이
 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
 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
 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고 판시하여 제조
 물책임법의 구체적인 적용례를 다져가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제조물들이 가지는 고도의 기술 집약성 때문에 소비자가 하자
 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제조물의 하자로 말미암아 확대된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며 소송과정에서는 제품의
 생산과정과 기술적인 상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측에게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품 표시 결함도 포함, 경고문구 등 표시해야

그리고 제조물책임이라는 것이 설계, 제조상의 결함뿐만 아
 니라 제품 표시상의 결함도 포함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담
 배에 표시된 경고문구나 키파면에 부착된 뜨거운 물 조심 경고
 표시 등이 모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도 요즘은 제조물
 의 표면이나 설명서 등에 경고문구나 주의사항 표시가 커다랗

게 붙어있는 걸 쉽
 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모
 두 제조물책임법과 관
 련되어 시행된 것들이
 다. 가령 제품 특성상 조심
 해야 함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으로 인해 소비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
 자는 표시상의 결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제조물을 생산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 표시에도 신
 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법률 서비스가 사후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여겨지던 과거와
 는 달리 최근에는 사전예방적 법률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제조물책임법과 그 제반 법률 정보는 제조물의 생산
 과 소비라는 생활 영역에 있어서, 기업의 제조물의 생산단계에
 서부터 안전과 소비자보호를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소
 비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제조물 사용에 대한 각별한 관심까
 지도 이끌어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과학, 기술의
 발전 못지않게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중요하
 다는 점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과학과 기술은 법률
 적 문제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과 코넬대학교에
 서 석사학위를, 워싱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
 및 뉴욕주 변호사, 런던국제중재재판소 중재인, 과기부·건교부
 법률고문,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